

발행인 : 서울특별시중랑구청장
 편집인 : 기획홍보과장
 서울특별시중랑구 봉화산길 179번지
 전화 : 2094-0470~5



제1649호 2010. 6. 9.

공 고

제2010-394호	건축허가에 따른 도로 지정 공고	2
제2010-396호	서울특별시중랑구 담배소매인 지정 기준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4
제2010-397호	서울특별시중랑구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6

인사발령

별정직 공무원 신규임용	8
--------------	-------	---

※ 전부서 및 의뢰기관에게 알려드립니다.

- ➡ 중랑구보 게재의뢰 및 편집 문의 TEL: 2094-0474 / FAX: 2094-0479
- ➡ 중랑구보 발간일은 매주 목요일이며, 공휴일인 경우에는 다음날 발행
- ➡ 중랑구보 게재접수는 D-3일 18:00 까지이며 공휴일은 날짜산정에서 제외

D-3일 접수 →
 D-2일 편집·교정 →
 D-1일 편집·교정 →
 D일 발간

- 🔴 구보게재일자가 문서시행일이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구보는 공문서의 효력을 가지며, 구 공무원은 반드시 읽어야 합니다.

공 람										
--------	--	--	--	--	--	--	--	--	--	--



공 고

서울특별시중랑구 공고 제2010-394호

건축허가에 따른 도로 지정 공고

아래 건축허가 신청 토지는 지적 상 도로에 접하지 아니한 토지로 망우동 73-26호 토지 일부를 도로로 지정하여 건축허가 신청된 바,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11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도로를 건축법 제45조 제1항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지정 공고 합니다.

2010년 6월 9일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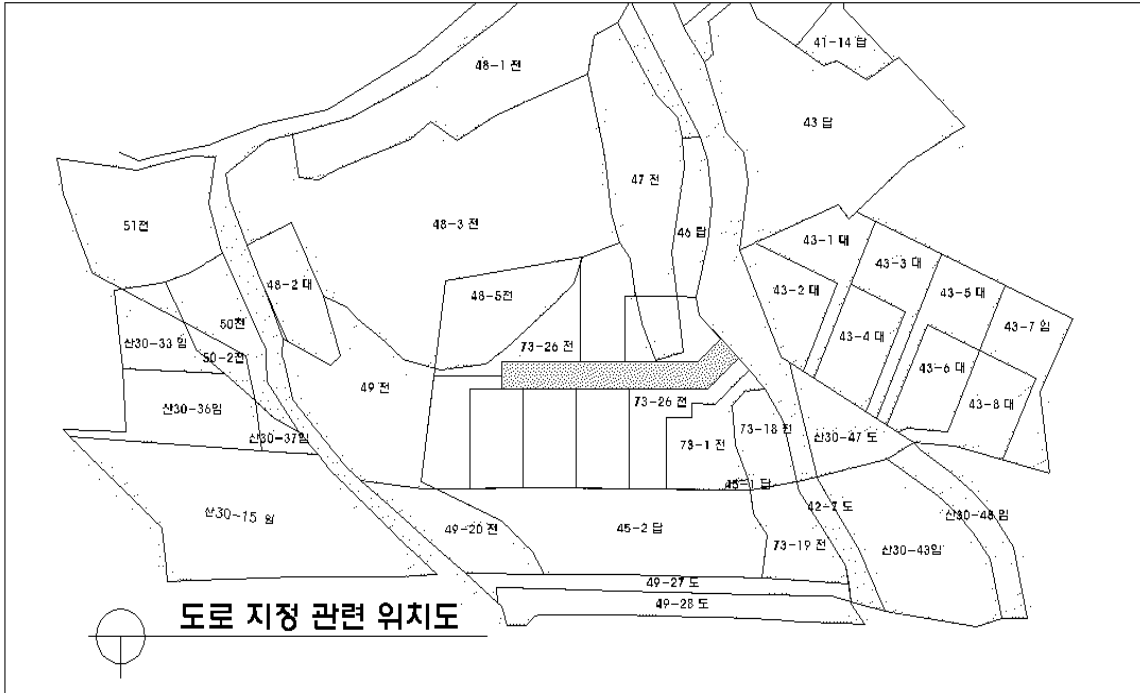
1. 건축허가 신청 위치 : 중랑구 망우동 73-26호 외 1필지(관련지번 : 망우동 47번지)
2. 도로지정 현황

도로지정 위치	면적(지목)	도로너비(m)	도로길이(m)
망우동 73-26호	342.0㎡(전)	6.0	57.2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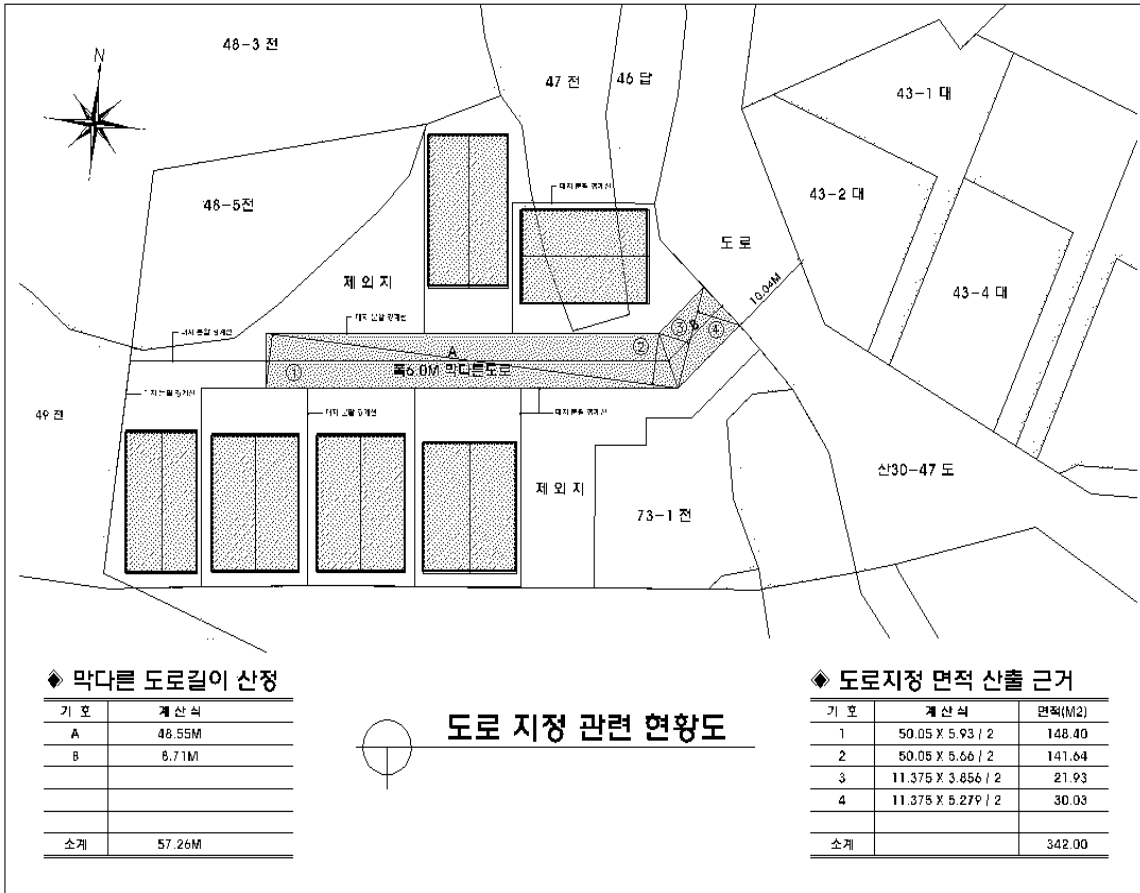
3. 도로지정 근거 : 「건축법」 제45조 제1항
4. 공고기간 : 공고일 다음날부터 14일간(2010. 06. 09. ~ 2010. 06. 22)
5. 문의기관 : 중랑구청 건축과(☎ 2094-2280 ~ 4)

붙임 : 도로 지정 관련 위치도 및 현황도 1부. 끝.

도로 지정 관련 위치도



도로 지정 관련 현황도



◆ 막다른 도로길이 산정

기 호	계 산 식
A	48.55M
B	8.71M
소계	57.26M

◆ 도로지정 면적 산출 근거

기 호	계 산 식	면적(M ²)
1	$50.05 \times 5.93 / 2$	148.40
2	$50.05 \times 5.66 / 2$	141.64
3	$11.375 \times 3.856 / 2$	21.93
4	$11.375 \times 5.279 / 2$	30.03
소계		342.00

서울특별시중랑구 공고 제2010-396호

서울특별시중랑구 담배소매인 지정 기준 등에 관한 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중랑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5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0년 6월 9일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

서울특별시중랑구 담배소매인 지정 기준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담배소매인 지정기준 중 일부를 우리구 실정에 맞게 정비하고 분쟁의 소지가 있는 부분에 대하여 보다 명료하게 규정함으로써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여 소매인간 건전성을 유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소매인 지정기준(안 제4조)

- 공항, 선박여객터미널, 기차, 선박 등 불필요한 내용 삭제
- 6층이상이므로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및 매장면적 1백제곱미터 이상인 종합소매업 점포의 장소에 대하여는 영업소가 1층에 위치하고 출입문이 외부와 접해 있을 경우에는 50미터 거리제한 규정 적용함을 명시함
- 담배자동판매기는 기 지정 소매인만이 영업소 내부에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함

3. 의견제출

본 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6월 29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중랑구청장(참조 : 지역경제과장, 서울시 중랑구 봉화산길 179, 우 131-701, 전화 2094-1260, FAX 2094-126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자세한 내용에 대하여 문의하실 분은 중랑구청 지역경제과로(☎ 2094-1260)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중랑구 공고 제2010-397호

서울특별시중랑구 지명위원회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 「서울특별시중랑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0년 6월 9일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

서울특별시중랑구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서울특별시중랑구 지명위원회 관련 근거법인「측량법」이 폐지되고,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새 법률에 맞게 「서울특별시중랑구 지명위원회 조례」를 개정하는 한편,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며, 길고 복잡한 문장을 간결하게 하는 등 주민이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서울특별시중랑구 지명위원회 조례」의 근거규정을 “「측량법」 제58조 및 동법시행령 제35조”에서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8조”로 변경함. (안 제1조)

나. 그 밖에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함.

3. 의견제출

본 조례 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6월 30일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중랑구청장(참조: 자치행정과장, 서울시 중랑구 봉화산길 175 / 우131-701, 전화 : 02-2094-0410, 팩스 : 02-2094-0419, E-mail : informationx@jn.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가. 입법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다. 자세한 내용에 대하여 문의하실 분은 중랑구청 자치행정과
(☎ 02-2094-0410)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발령

별정직 공무원 신규임용

2010. 6. 3.

증량구청장

연번	성명	발령내용	현직	
			부서	직급
1	김수덕	지방별정직 7급상당(비서)에 임함 행정국 총무과 근무를 명함	(신)	규)